

「부유물 원인분석」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부유물 원인분석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해안가(서산시 부석면) 부유물과 담수호 방류수(부남호, 간월호, 홍성호)의 오염원 유래 파악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4. 소요예산: 19,360,000원(VAT 포함)

5. 과업의 범위

- (시료채취) 부남호, 간월호, 홍성호 현장 시료채취(12점)
- (안정동위원소 분석) 탄소, 질소 동위원소 분석 및 오염원 유래 파악
- (성과품작성) 결과보고서

II 과업의 일반사항

용역의 성과물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 또한 본 과업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는 계약의 중요한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며 계약 상대방은 전체(과업지시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公社의 결정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公社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타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公社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참여자 변경승인을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성과품에 인용된 자료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서 公社가 소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公社에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3. 서류제출

- 다음 서류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 책임자 및 참여자 서약서(보안각서)
 - 안전관리계획서
- 완료보고(준공계)는 계약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최종보고서,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公社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公社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위반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 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公社가 갖는다.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기타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 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박은숙 과장, 061-338-5826, larcniji@ekr.or.kr)

9.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의 편집, 제출방법은 公社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 전자파일로 제출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용역명	시설구분	점검일자
부유물 기원 분석	담수호	2026. ○○.○○.()

점검업체	점검자		용역 감독원
(주)○○○ ○○○○부	직급 ○○○ (서명)	직급 ○○○ (서명)	직급 ○○○ (서명)

구분	항목	주 요 점 검 사 항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유/무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작업 준비		작업 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근로자는 구멍의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반팔착용 금지 등 작업 전 상태점검을 하였는가?		
		출근 시 근로자 음주확인 및 혈압환자 등 건강확인은 하였는가?		
		작업반별 당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을 공유하였는가?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작업전에 점검하고 있는가?		
사면 안전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사면으로 내려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구분	항목	주요 점검 사항	이상유무	조치사항
		바닥의 잡초·장애물 등으로 위험한가?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양안 접촉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점검작업 (수질조사)		출입로의 추락, 낙상 등 위험한가?		
		출입·통행에 지장물·추락·익사 등의 문제가 없는가?		
		보트의 이상상태(침수 등)는 없는가?		
		보트의 탑승정원은 준수하였는가?		
		보트의 공기압은 적정한가?		
		모터엔진의 연료(전지)는 충분한가?		
		모터엔진 및 연료에 의한 화재 위험성은 없는가?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예시> ○흑서기 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우천으로 인한 작업 취소		